

「군포도시공사 명예감사관 운영」 시행내규 전면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화



2021년 9월 6일

군포도시공사 내규 제53호

공사 명예감사관 운영내규 전면개정 내규

명예감사관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한다.

군포도시공사 청렴 옴부즈맨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군포도시공사의 위법·부당한 사항의 개선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의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렴 옴부즈맨”이란(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 부패 취약업무, 윤리경영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윤리경영의 미흡한 부분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며 윤리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안전감사팀”은 사장 직속의 감사부서로서 공사 직제규정에 명시된 조직을 말한다.

3. “대표 청렴 ombudsman”은 청렴 ombudsman의 대표로서 ombudsman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ombudsman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렴 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렴 ombudsman의 구성 등

제4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 ombudsman은 1인에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 ombudsman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경력을 가진 자, 윤리경영과 연관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이 있는 자, 공사가 ombudsman으로 적격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장이 위촉한다.

③ 청렴 ombudsman은 모두 외부인원으로 선정한다.

④ 그 밖의 청렴 ombudsman의 모집과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 ombudsman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 ombudsman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 법률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사의 업무사항 외부 유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청렴 ombudsman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의 여러 사유로 인해 청렴 ombudsman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제3장 청렴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 등

제6조(역할) ① 청렴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주요업무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2. 부패 취약분야의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시정 요구
3.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 및 자문
4. 공사 윤리경영 사업에 참여 및 평가, 정책 자문
5. 공사 서비스의 불편사항 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요구
6. 기타 공사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렴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 경기도, 군포시 등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경찰·검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4. 법령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개인의 사생활이나 공사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6. 청렴 옴부즈맨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8. 기타 공사의 사장이 관여를 인정하지 않는 사항

제7조(직무수행) ① 청렴 옴부즈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청렴 옴부즈맨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장 및 안전감사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청렴 옴부즈맨은 직무수행에 있어 안전감사팀과 협의를 통해 직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의무준수) ① 청렴 옴부즈맨은 성실한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청렴 옴부즈맨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 또는 문서 등을 임기 중 및 임기 후에도 타인에게 공표·배포·유포할 수 없다.
- ③ 청렴 옴부즈맨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청렴 옴부즈맨은 공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청렴 옴부즈맨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청렴 옴부즈맨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청렴 옴부즈맨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을 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 1. 청렴 옴부즈맨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청렴 옴부즈맨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 옴부즈맨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관계자인 경우
-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 옴부즈맨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청렴 옴부즈맨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관계 부서장, 이해 당사자 등)는 청렴 옴부즈맨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 옴부즈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4장 청렴 옴부즈맨의 운영방법 등

- 제10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청렴 옴부즈맨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표 청렴 옴부즈맨을 두며, 독립적 운영을 위해 대표 청렴 옴부즈맨은 호선을 통해 선정한다.
- ③ 대표 청렴 옴부즈맨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청렴 옴부즈맨 회의는 청렴 옴부즈맨 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다룬다.
- ⑤ 청렴 옴부즈맨 회의의 간사는 안전감사팀장이 맡는다.

제11조(수당의 지급) 청렴 옴부즈맨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회의비, 식비 등 관련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적 지원) 사장은 효율적인 옴부즈맨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주관부서) 청렴 옴부즈맨의 주관부서는 미래기획부 안전감사팀으로 하며 감사담당자는 청렴 옴부즈맨 활동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비밀엄수) 청렴 옴부즈맨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제15조(기타 운영계획) 청렴 옴부즈맨 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렴 옴부즈맨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미 래 기 획 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미 래 기 획 부 장 이 현 동
	직 위 성 명	안 전 감 사 팀 장 이 영 남
	담당자 성명 (전 화)	문 원 미 (390-7645)

청 령 서 약 서

청 령 음 부즈 맨

성명 : (인)

본인은 군포도시공사 청령 음부즈맨으로 위촉되어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청령 음부즈맨으로 위촉된 기간동안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 규정을 따르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정직과 봉사의 자세로 직무에 전념한다.
3. 본인은 위촉 중은 물론 해촉 후라도 이권의 청탁을 하지 아니하고 음부
즈맨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만약 비밀을 누설
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 .

군포도시공사 사장 귀하